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42
----------	-----

제출연월일 : 2008. 6. 1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일 중심의 강소조직을 위하여 본청의 실·국 및 사업소를 일부 통합하고 기능을 조정함에 따라 인력을 일부 감축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008명으로 하며,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05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5명으로 함(안 제2조).
-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본청의 정원을 1,07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65명, 직속기관의 정원은 1,138명, 사업소의 정원을 843명으로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관련부서 합의완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8. 6. 5. ~ 6. 16. / 접수 의견 9건<4건(일부)반영, 5건 미반영>
- 마. 참고자료
 - (1) 정원조정 : 3,134명 → 3,124명(10명 감원)

<정원관리기관별>

- 본 청 : $\Delta 17$ 명 (별정직 $\Delta 3$, 기능직 $\Delta 14$)
- 의 회 : +2명 (기능직 +2)
- 직속기관 : +72명 (일반직 $\Delta 2$, 연구·지도직 $\Delta 4$, 소방직 +78)
- 사업소 : $\Delta 67$ 명 (일반직 $\Delta 56$, 기능직 $\Delta 11$)

<직종별>

- 일반직 : $\Delta 58$ 명 (3급 $\Delta 2$, 4급 $\Delta 5$, 5급 $\Delta 1$, 7급 $\Delta 23$, 8급 $\Delta 27$)
- 연구·지도직 : $\Delta 4$ 명 (연구사 $\Delta 2$, 지도관 +1, 지도사 $\Delta 3$)
- 소방직 : +78명 (소방경 +5, 소방위 +5, 소방장 +16, 소방교 +33, 소방사 +19)
- 별정직 : $\Delta 3$ 명 (6급 $\Delta 1$, 7급 $\Delta 1$, 8급 $\Delta 1$)
- 기능직 : $\Delta 23$ 명 (8급 +1, 9급 $\Delta 7$, 10급 $\Delta 17$)

(2) 주요증감내역 : 10명 감원

- 도시철도기획단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 : $\Delta 27$ 명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조정계획 및 업무량 분석에 따른 인력 감축 : $\Delta 20$ 명
- 장기 결원에 따른 인력 감축 : $\Delta 22$ 명
- 한시정원 기간 만료 및 업무량 분석에 따른 인력 감축 : $\Delta 19$ 명
- 소방직 3교대 부족인력 보강 및 노은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증원 : +78명

정원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및 검토결과

제출자(부서)	의견접수 내용	검토결과
예산담당관	○예산절감 업무 추진인력 및 담당 통합에 따른 인력 증원	○담당통합에 따른 최소인력 보장 “일부반영”
정보화담당관	○공간영상정보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추후 업무량 증가추이에 따라 검토 “미반영”
자치행정과	○ 폐지되는 담당의 담당자인력 확보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인력 보장 “일부반영”
여성가족 청소년과	○가정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1명)	○추후 업무량 증가추이에 따라 검토 “미반영”
보건위생과	○ 「전국체전기획단」에 1명 증원 (보건)	○추후 해당부서 요청시 검토 “미반영”
생태하천 사업단	○ 인력증원 5명 - 생태하천사업단 2명 - 하천관리사업소 3명	○추후 업무량 증가추이에 따라 검토 “미반영”
문화예술의 전당	○무대예술과 담당통합에 따른 인력 조정(감축시 교대근무에 따른 업무추진 어려움)	○무대업무 담당인력 근무형태를 감안 현 인력 유지 “반영”
동구청 도시 공원녹지과 김은동 외 9인	○공원녹지분야 인력증원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증원은 불가 “미반영”
보건환경 연구원	○ 정원감축대상 변경 - 연구관 △1명 → 연구사△1명	○ 「가축위생연구부」 존치에 따라 감축대상 변경 “반영”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3,134명”을 “3,124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2,098명”을 “2,008명”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중 “973명”을 “1,051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63명”을 “65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3451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3512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중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체전기획단 정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조례 제3583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중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체전기획단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직종, 직급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계		3,124	1,078	65	1,138	843
정무직 (시장)		1	1			
일반직	소 계	1,426	858	35	38	495
	2~3급	1		1		
	3급	10	7		1	2
	3~4급	1	1			
	4급	64	41	3	4	16
	5급	237	185	3	11	38
	6급	497	351	17	11	118
	7급	466	243	11	11	201
	8급	150	30			120
소방직	소 계	1,051	62	0	989	0
	소방정	8	3		5	
	소방령	27	12		15	
	소방경	62	7		55	
	소방위	66	7		59	
	소방장	157	14		143	
	소방교	314	18		296	
	소방사	417	1		416	
지도직	소 계	31	0	0	31	0
	지도관	3			3	
	지도사	28			28	
연구직	소 계	79	3	0	55	21
	연구관	14			12	2
	연구사	65	3		43	19
별정직	소 계	40	16	9	0	15
	1급상당	1	1			
	4급상당	6	1	4		1
	5급상당	7	3	3		1
	6급상당	8	5			3
	7급상당	14	4	2		8
	8급상당	4	2			2
기능직	소 계	496	138	21	25	312
	6급	25	9	1	1	14
	7급	56	18	3	3	32
	8급	95	25	6	4	60
	9급	152	27	5	10	110
	10급	168	59	6	7	96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p>
<p>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3,134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2,098명</u></p> <p>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973명</u></p> <p>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63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u>3,124명</u>----- -----</p> <p>1. ----- <u>2,008명</u></p> <p>2. ----- <u>1,051명</u></p> <p>3. ----- <u>65명</u></p>
<p>부칙(조례 제3451호)</p> <p>제2조(한시정원) ①혁신분권담당 정원 4명(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②균형발전담당 정원 3명(행정·토목5급 1, 행정6급 1, 행정·토목6급 1)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③고객만족행정담당 정원 3명(행정5급 1, 행정6급 2)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④ <삭제></p> <p>⑤과거사진상규명담당 정원 3명(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⑥복식부기담당 정원 4명(행정5급 1, 행정6급 1, 전산6급 1, 행정7급 1)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부칙(조례 제3451호)</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부칙(조례 제3512호)</p> <p>②(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중 자치행정과 과거사진상규명담당인력 1명(8급)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경제통상국의 IAC지원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및 문화체육국 전국체전기획단 정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부칙(조례 제3583호)</p> <p>②(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조정되는 정원중 경제통상국 WTA지원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교통건설국 시내버스개선추진인력 9명(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부칙(조례 제3512호)</p> <p>②(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중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체전기획단 정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부칙(조례 제3583호)</p> <p><삭제></p>

현						개						
행						정						
안						안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명)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명)						
기관별 직종/직급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 관	사업소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 관	사업소		
총 계	3,134	1,095	63	1,066	910	총 계	3,124	1,078	65	1,138	843	
정무직(시장)	1	1				정무직(시장)	1	1				
일 반 직	소 계	1,484	858	35	40	551	소 계	1,426	858	35	38	495
	2~3급	1		1			2~3급	1		1		
	3급	12	8		1	3	3급	10	7		1	2
	3~4급	1	1				3~4급	1	1			
	4급	69	44	3	4	18	4급	64	41	3	4	16
	5급	238	181	3	12	42	5급	237	185	3	11	38
	6급	497	340	17	12	128	6급	497	351	17	11	118
	7급	489	242	11	11	225	7급	466	243	11	11	201
	8급	177	42			135	8급	150	30			120
소 방 직	소 계	973	62	0	911	0	소 계	1,051	62	0	989	0
	소방정	8	3		5		소방정	8	3		5	
	소방령	27	12		15		소방령	27	12		15	
	소방경	57	7		50		소방경	62	7		55	
	소방위	61	7		54		소방위	66	7		59	
	소방장	141	14		127		소방장	157	14		143	
	소방교	281	18		263		소방교	314	18		296	
	소방사	398	1		397		소방사	417	1		416	
지 도 직	소 계	33	0	0	33	0	소 계	31	0	0	31	0
	지도관	2			2		지도관	3			3	
	지도사	31			31		지도사	28			28	
연 구 직	소 계	81	3	0	57	21	소 계	79	3	0	55	21
	연구관	14			12	2	연구관	14			12	2
	연구사	67	3		45	19	연구사	65	3		43	19
별 정 직	소 계	43	19	9	0	15	소 계	40	16	9	0	15
	1급상당	1	1				1급상당	1	1			
	4급상당	6	1	4		1	4급상당	6	1	4		1
	5급상당	7	3	3		1	5급상당	7	3	3		1
	6급상당	9	6			3	6급상당	8	5			3
	7급상당	15	5	2		8	7급상당	14	4	2		8
8급상당	5	3			2	8급상당	4	2			2	
기 능 직	소 계	519	152	19	25	323	소 계	496	138	21	25	312
	6급	25	11			14	6급	25	9	1	1	14
	7급	56	18	3	3	32	7급	56	18	3	3	32
	8급	94	25	6	3	60	8급	95	25	6	4	60
	9급	159	29	4	11	115	9급	152	27	5	10	110
	10급	185	69	6	8	102	10급	168	59	6	7	96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

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6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19일
3. 상 정 일 자 : 제17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6. 24)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 양승찬)

1. 제안이유

일 중심의 강소조직을 위하여 본청의 실·국 및 사업소를 일부 통합하고 기능을 조정함에 따라 인력을 일부 감축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008명으로 하며,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을 1,05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5명으로 함(안 제2조).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본청의 정원을 1,07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65명, 직속기관의 정원은 1,138명, 사업소의 정원을 843명으로 함(안 별표).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박춘용)

○ 본 조례 안은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중 일반직 58명, 연구·지도직 4명, 기능직 23명, 별정직 3명 등 88명을 감원하고, 3교대 근무 등을 위한 인력 확충 차원에서 소방직 7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3,134명을 3,124명으로 10명을 감원하려는 사항임.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행하는 행정기구의 조정에 따라 국제 및 교육 업무, 문화산업 업무, 노인·장애인 복지 업무, 도시디자인 업무 등을 보강코자 탄력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중앙부처와의 비교시 지방 5급이상 상위직급 분포비율의 점진적인 불균형 해소, 인사적체 해소 등 직원들의 사기양양,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 실·국 주무담당에 대하여 5급에서 4급으로, 차석 직원에 대하여 6급에서 5급으로의 직급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해

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금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통해 감축 계획된 15명 외에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기관 및 기능의 과감한 위탁 시행을 통하여 정원의 감축 및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한 직급별 정원 책정시 복수 직렬을 최대한 억제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인사시 직렬간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